

보도해명자료 (14. 5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정부, 한미 FTA 원산지검증 합의서 왜 숨기나”

(14.5.13, 경향신문)

“박주선 의원, “미국산 오렌지검증 완화, 한미
FTA 개정에 해당” (14.5.14, 이투데이)

1. 기사내용

(경향신문)

- 한국이 미 농무부 발행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면서 미국산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문제가 1년 만에 해결
- 한국이 미 농무부 발행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한미 FTA 개정에 해당

(이투데이)

- 미국산 오렌지 등에 대한 원산지 검증 완화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간 합의가 한미 FTA개정에 해당된다는 지적 제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한-미 양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원산지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

- 한-미 FTA에 따른 직접검증 원칙에는 변동이 없으며 양 당국은 원산지 검증 시 정부 발급 증명서 외에 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빙 서류들도 고려할 수 있음

- 예를 들면,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과 관련, 미국 농무부가 발급한 품질보증서를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지만,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증 실시 가능

- 원산지 직접검증 방식* 관련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 요망

※ 한-미 FTA (제6.17-18조)에 따라, 수출자·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, 수입국 관세당국은 서면질의,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검증 수행

- 최근 양 당국 간 원산지 검증 관련 합의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한 실무적 내용으로, 한-미 FTA 개정과는 전혀 관련 없음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과 장 윤창현 (044-203-5760)
사무관 최원엽 (044-203-5762)